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405
------	------

2023. 12. 18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】

-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3. 12. 18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김상한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('23.7.10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바, 서울특

별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Ⅲ. 검토의견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폐지안의 개요

- 동 폐지조례안은 지난 6월에 제정¹⁾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)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’와 기능이 유사·중복되는 ‘지방분권협의회’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됨.

나. 특별법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경위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은 그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별도로 추진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것을 보완하고,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정됨.

< 통합 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법률 연혁 >

		자 치 분 권	균 형 발 전
참 여 정 부	법령	「지방분권특별법」 (법률 제7060호, 2004.1.16. 시행)	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(법률 제7061호, 2004.4.1. 시행)
	내용	- 지방분권 기본 이념, 사무배분 원칙, 자율과 참여의 원칙 등 규정 - 권한과 사무이양,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,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, 지방분권추진 위원회 구성 등	-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- 지역혁신체계 구축, 지역전략산업 선정·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, 지역발투자협약 체결 등
이명박 정부	법령	「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(법률 제8865호, 2008.5.30. 시행)	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(법률 제9629호, 2009.4.22. 시행)

1) 제정: 2023. 6. 9. 시행: 2023. 7. 10.
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분권 기본 이념, 사무배분 원칙, 지방분권 추진 일정, 지방분권정책의 시범실시 등 규정 -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정비,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,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발전위원회, 지역발전 5개년 계획,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- 5+2 광역경제권,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 산업, 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등
박근혜 정부	법령	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(법률 제11829호, 2013.5.28. 시행)	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(법률 제12215호, 2015.1.1. 시행)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, 지방분권 기본 이념, 사무배분 원칙 등 규정 - 지방분권 추진과제,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과제,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, 대도시에 대한 특례,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발전위원회, 지역발전 5개년 계획,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·운영 근거 마련 - 지역특화산업,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신설,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,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등
문재인 정부	법령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(법률 제15501호, 2018.3.20. 시행)	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(법률 제15489호, 2018.3.20. 시행)
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,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등 규정 - 자치분권 기본원칙, 자치분권 추진과제, 지방 행정체제 개편, 자치분권위원회 설치·운영, 이행상황 점검·평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복원 근거 마련 - 지역혁신체계, 국가혁신융복합단지, 지역발전 투자협약, 시·도지역 혁신협의회, 시·도지역혁신지원단 설치 등

* 출처: 송우경, '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', 월간 KIET 산업경제(2023.7.) p.11의 내용을 추가·보완함

- 동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'지방시대위원회'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'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'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함²⁾.

2) 특별법 제62조 및 제67조제1항

제62조(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.

제67조(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- 또한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·운영·기능 등 필수사항은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에 상세히 규정하고,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(같은 조 제9항).
- 이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내용 이외에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「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(의안번호: 1404)이 동 폐지안과 함께 제출됨.

<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의 법령상 주요 내용 >

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			
특별법 시행령 제65조	구성	제1항	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구성
		제2항	지방자치분권, 지역균형발전 관련 학식·경험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해당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(성별 고려) - 지방시대위원장 추천 -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 추천 - 대학·연구기관·기업·공공기관·비영리단체 추천 - 해당 시·도 지방의회 의원 - 해당 시·도 공무원 -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 관련 전문성·역량을 갖춘 사람
		제3항	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시·도지사가 지명
	임기	제4항	위촉 위원 임기 2년
	회의 운영	제5항	시·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의장
	의결 방법	제6항	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	기능 (심의 사항)	제7항	- 시·도 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 수립 - 관할 시·도 지역 산업·기업의 육성 등 중장기 전략 수립 - 관할 시·도 추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시행 - 관할 시·도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,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의 운영체계평가 및 개선 - 관할 시·도 내 인구감소지역 발전 -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·육성 - 시·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	분과 위원회	제8항	효율적인 심의·의결 위해 필요 시 설치
	시·도 조례위임	제9항	위 사항에 외에 시·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<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 현황>

○ 위원회 구성

- 구 성 : 위원장 포함 17명
 - 임명직(2) : 기획조정실장, 균형발전본부장
 - 위촉직(15) :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전문가
- 위촉직 위원 세부 구성 : 분권 6명, 지역균형 9명

구분	분권(6)			지역균형(9)					
5대 전략	자치분권			교육개혁	혁신성장	특화발전		정주환경	
분야 (9)	지방자치	재정분권	자치경찰	교육개혁	산업·경제	문화·관광	교통	도시계획	보건
위원수 (15)	4	1	1	1	3	1	1	2	1

- 임 기 : 민간위원 2년(공무원은 직위 재직기간)
- 위촉기간 : 2023. 9. 14. ~ 2025. 9. 13.

○ 위원회 운영

- 회의운영 : 시장의 소집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
 - 위원 위촉해제, 제척·기피·회피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준용
- 정 족 수 :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

< 2023년 제1차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>

- 개최일시 : 2023. 9. 19.(화) 16:00 ~ 17:30
- 심의내용 :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('23~27년)(안) 심의·의결
- 심의결과 : 원안 가결

< 2023년 제2차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결과 >

- 개최일시 : 2023. 11. 21.(화) 10:00 ~ 13:00
- 심의내용 :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의결
- 심의결과 : 원안 가결

다. 폐지안의 주요 사항 검토

- 2015년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서울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<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의 조문 체계 >

총 칙	제1조(목적)	지방분권 협의회	제8조(협의회의 기능)
	제2조(정의)		제9조(협의회의 구성)
	제3조(책무)		제9조의2(해촉)
계 획	제4조(추진계획)		제10조(협의회의 운영)
	제5조(정책과제의 추진)		제11조(협의회의 존속기한)
	제6조(시민참여의 확대)	지 원	제12조(경비의 지원)
지방분권협의회	제7조(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)	주민자치주관	제13조(주민자치주관 지정·운영 등)

- 동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조문별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면, 동 조례 제7조에 따른 ‘지방분권협의회’는 지방분권 촉진·지원에 관한 자문 기관으로, 지방분권 촉진·지원 추진계획 수립·시행, 지방분권 과제 추진 등의 자문역할을 함³⁾(제8조).
- 이는 ‘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’의 서울특별시 지방시대 계획 수립·시행, 관련 과제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·의결 기능과 유사·중복됨(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).
- 또한 동 조례의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‘지방분권 촉진·지원추진 계획’은 특별법의 ‘지방시대 종합계획’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됨.

3) 제8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
3.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
4.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그리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 규정(제12조)의 경우, 현재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, 필요 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및 관련 추진 과제의 내용으로 지원 가능함.
- 더욱이 주민자치주간 지정·운영 규정(제13조)은,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념일이 변경·확대되면서(지방자치의 날 →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⁴⁾)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17개 시·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‘지방시대 엑스포’ 행사가 추진 중임.

<2023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개요 >

- 행사명 :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대전
- 행사기간 : 2023. 11. 1. ~ 2023. 11. 3.
- 주 최 : 지방시대위원회, 6개 중앙부처(교육부·행안부·산업부·국토부·중기부·국가교육위원회),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
- 주 관 : 대전광역시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한국생산성본부
- 행사구성 : 기념행사(전시장 관람, 유공포상 등), 전시회(지방시대존, 시·도관, 지방자치 등 테마관), 정책 컨퍼런스(산·학·연), 국민참여행사(청년기업참여 등) 등

- 그 밖의 규정은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(제1조~제3조) 및 책무적 성격의 일반 조항(제4조 및 제5조)으로, 동 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동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(의안번호: 1404)의 심의·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4) ‘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’(10월 29일)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,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임(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별표 1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(’23.7.10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가 출범 예정인바,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 제외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해당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08. 17. ~ 09. 06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양현정(☎2133-6731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폐지조례안 내용은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31)